의 안 번 호	제 호
의결연월일	2009. 11. (제 회)

의 결 사 항

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

발 의 자	안철우 의원 외 1
발의연월일	2009. 11

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

의안 번호 2009 ~

발의연월일	2009. 11	
발 의 자	안철우 의원 외 1	

1. 제안이유

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1조, 제2조).
- 나.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 -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도개선과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지원
 -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에 노력
 - 다른 지역 건설사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
- 다.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정함(안 제4조).
 -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시공 방지
- 라.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에 자랑 스런운 건설인 선정(안 제5조).
- 마. 거창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그 밖에

1)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지역건설산업"이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군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.
 - 2. "지역건설산업체"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,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.
- 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,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·육성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.
 - 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·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⑤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- 제4조(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)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)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에 따른 거창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
 - 2.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
- 제6조(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)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
 - 2.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 비율 실태파악에 관한 사항
 - 3.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과 해소에 관한 사항
 - 4.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
 - 5.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
 - 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제8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위원은 재무과장, 건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.

- 1. 군의회 의원
- 2.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- 3.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- 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제9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1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 -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2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